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049
----------	-------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액·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에 혼선이 없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은 연장하되, 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 정비(현행 제26조제1항제10호 및 제27조제14호 삭제)

소액 담배의 단종 및 특수용 담배의 군납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소액·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소

액 및 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 명확화(안 제32조, 제34조 및 제54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발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이 아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명확하게 정비함.

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

소매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로 우대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로 적용하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우대 세액공제율은 1.2

퍼센트로, 공제금액의 연간 한도는 5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작성”을 “공급”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작성”을 각각 “공급”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표 제1호나목의 율란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1.2퍼센트”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호 중 “작성”을 “공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4호, 제34조제3항 각 호 및 제5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 략)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 20. (생 략) ② (생 략)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3. (생 략)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u>담배</u>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11. ~ 2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 -----. 1. ~ 13. (현행과 같음) <u><삭 제></u>

15. (생 략)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작성 연월일

5. (생 략)

② ~ ⑧ (생 략)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

15. (현행과 같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공급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1. -----

----- 공급 ---

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u>작성</u>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 ----- ----- ----- ----- <u>공급</u> ----- -----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u>작성</u>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 ----- ----- <u>공급</u> ----- -----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 ----- ----- ----- ----- ----- ----- ----- ----- ----- -----

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②·③ (생략)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

 -----.

---		--
1. ----- ---	가. ----- ----- ----- --	-----
	나. ----- ----- ----- -----	----- -- 2028년 12월 31일----- -----
	다. ----- -----	-----
2. ----- --	가. ----- ----- ----- ----- -----	-----
	나. ----- ----- ----- ----- ----- -----	-----
	다. ----- -----	-----
3.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 500만원-----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1.2퍼센트-----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 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 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u>작성</u> 연월일	3. <u>공급</u> -----
4. 5. (생 략)	4.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6,397억원

(단위: 억원)

구 분 \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해	당	없	음		
지출	소 계(A)							
수입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1,319	△1,319	-	-	-	△2,638	△1,319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46)	4,759	6,345	6,345	1,586	-	19,035	4,759
	소 계(B)	3,440	5,026	6,345	1,586	-	16,397	4,099
총 비용(A-B)		△3,440	△5,026	△6,345	△1,586	-	△16,397	△4,099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42조(면세농산물 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26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2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우대 제도 일몰을 연장하면서 우대공제율 감소(1.3%→1.2%) 및 우대공제한도 폐지(1,000만원→500만원)하여 세수가 증가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 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2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6.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면세농산물등의 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42)
- **세수감 : △2,638억원 (국세분: △1,971억원, 지방소비세분: △667억원)**
- 1,319억원* × 2년(일몰 연장기간) = △2,638억원
- * '24년 공제세액을 토대로 추정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46)
- **세수증 : +19,035억원 (국세분: 14,219억원, 지방소비세분: 4,816억원)**
- 6,345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9,035억원
- * '24년 공제세액을 토대로 추정

Ⅳ.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함유지	김태경	이종수	김건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함유지	044-215-4326	g15991@korea.kr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본 법률안에 따른 세입 증가액은 16,397억원으로 추계되며, 비용추계 총비용은 음수 (-)로 산출되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안 관련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불필요함

II. 부문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III.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해당없음

IV. 부대의견

○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6년 7~8월	기획예산처	세입예산안에 반영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함유지	김태경	이종수	김건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함유지	044-215-4326	g15991@korea.kr